

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. 4. 21 선고 2019가단423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희

피고B

변론 종결 2020. 3. 17.

판결 선고 2020. 4. 21.

주 문

1. 피고는 정읍시 C 임야 661㎡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가) 부분 43㎡ 지상 주거용 천막, 별지 참고도 표시 5 내지 18,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나) 부분 304㎡ 지상 스톤지붕 축사를 철거하고, 원고에게 위 토지를 인도하라.
2. 피고는 원고에게 1,543,282원 및 2019. 12. 15.부터 제1항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,8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4. 제1,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정읍시 C 임야 661㎡는 원고의 소유인데(갑 제1호증), 그 위에 별지 참고도 기재와 같이 주문 제1항 기재 피고의 건축물이 있으므로(2019. 9. 17. 감정서),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 건축물을 철거하고, 원고에게 그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그리고 2009. 2. 15.부터 2019. 12. 14.까지의 위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차임 상당액이 1,543,282원이고, 2019. 12. 14.을 기준으로 월 차임 상당액이 15,880원이므로(2019. 12. 18. 감정서),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위 1,543,282원 및 2019. 12. 15.부터 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,8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피고는 피고의 아버지가 1945. 4. 1.부터 원고 소유의 위 토지를 점유하였고, 피고가 그 점유를 승계하였으므로,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,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의 아버지 및 피고가 1945. 4. 1.부터 계속하여 위 토지를 점유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판사허윤범

별지